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76호 2015. 3.18.(수)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 -----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	3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5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7
---	----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관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회의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

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⑥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⑦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⑧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⑨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⑩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⑪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⑫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육아지원”을 “부모교육 운영 및 육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8.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 지도·감독)”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2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사업

3.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4.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

이집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 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도서관의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서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4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로 한다.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등)”을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5인이내”를 “25인 이내”로, “고문외에 3명이내”를 “고문 외에 3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구에서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 -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50%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년가장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00%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한 다문화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50%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대등”을 “휴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 이상”을 “15일 이상”으로, “15일미”를 “15일 미”로,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을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으로, “0.5일미”를 “0.5일 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 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필요한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중”을 “임신 중”으로, “90일”을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4항 본문 중 “임신한경우”를 “임신한 경우”로 하고, 단서조항를 삭제한

다. 같은 조 제8항 중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5조의2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 규정”을 “법 제57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당 기타”를 “정당 그 밖의”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 기업 또는 그 설치·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간 거리 : 100미터 이상 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

⑦ 수거함 관리자는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5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검단4동”를 “검단4동, 검단5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를 “수강(사용)료는”으로,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하여”를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기준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7조) 제5호을 삭제한다.

제26조(중전의 제27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7조(중전의 제28조)제1항중 “다른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고”를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고,”로 한다.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32조)중 “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2호,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내)	비 고
강 사	일반강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0,000원	○ 1회 1시간 초과시 30분당 50% 가산 지급할 수 있음. ※ 단, 초과시간은 1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봉사분야		봉사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		
전화		휴대폰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센터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상 지참, 패용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담당강좌
	생년월일	-		1.
	주 소			2. 3.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기 간	주민자치센터 강의 경력 등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전화번호		직 업	
주요경력			
추천사유 (신청사유)			

위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표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정기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제 회 주민자치위원회(정기회의, 임시회의) 회의록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 심의안건
- 1.
- 2.

- 회의내용
- (○시 ○분 개회)
- 사회자 ○ ○ ○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동 장 ○ ○ ○
.....
-
-
- (○시 ○분 폐회)

- 참석위원 : 명
○○○, ○○○, ○○○,
- 불참위원 : 명
○○○, ○○○, ○○○,

위원장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
부위원장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
간 사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	위 원 : ○ ○ ○ (서명)